

【 13 】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출생아 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나. 출생아 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5조)
- 다. 출생아 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원절차를 정함(안 제6조)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신부의 출산을 축하 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유아양육비”(이하 “양육비”이라 한다)이라 함은 셋째자녀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의 구분) 이 조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은 출산장려금과 영유아양육비로 구분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
2. 양육비의 지원대상자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까지로 한다.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원액은 1인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양육비의 지원액은 1인당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출생아의 장려금 및 양육비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신고를 받은 시장·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려금 및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에 거주사실 여부, 영유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하여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양육비 지원의 중단)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 시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전출·사망 등의 변동 사항 발생시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급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려금 및 양육비를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모·부자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영유아 관련 지원금 수혜 대상자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금액이 양육비를 초과할 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 시장은 지원현황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양육비 신청 대장

연번	신청 일자	보 호 자				신 생 아		계좌 번호	전화번호	비고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거주 기간 (년,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대장

연 번	보호자(부 또는 모)				신생아		신청일	지급일	입 금 계좌번호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생년 월일	주 소	거주 기간 (년,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

연번	보 호 자(부 또는 모)			대상아동		변동사유	변동일시	비 고
	성 명	주 소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